

제 2020-0481-00699 호

직접생산확인증명서



○ 대 분 류 : 전기시스템, 조명, 부품,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

○ 제 품 명 : 배전,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

※ 동 제품의 직접생산 가능범위 : 붙임의 세부품명별 '필수특이사항'에 따름

○ 생 산 업 체 명 : 사단법인 해오름장애인협회

○ 사 업 자 번 호 : 209-82-11809

○ 대 표 자 성 명 : 노영주

○ 소 재 지 (본사)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우성빌딩 3층

(공장1) : []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3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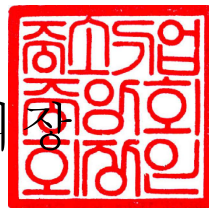
※ 뒷면 「생산공장 목록」에 계속

○ 유효기간 : ※ 붙임의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참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.

출력일자 : 2020년 07월 27일

중소기업중앙회



★ 유의사항 (행정조치)

-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,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
(위반시,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, 형사처벌)
- ②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
(미 반납시,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)
-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

★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★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을 통해 출력(2020-07-27 13:50)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제 2020-0481-00699 호

생산공장 목록

생산공장	사업자등록번호	소재지
(공장3)	167-82-00221	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722번길 21-32 사단법인 해오름 장애인협회 기전사업단
(공장4)이든사업단	734-82-00360	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859-7 사)해오름장애인협회 이든사업단

- 이 하 공 란 -

★ 유의사항(행정조치)

-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,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
(위반시, 모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, 형사처벌)
- ②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30일 이내에 증명서 반납
(미 반납시,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)
-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

★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★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을 통해 출력(2020-07-27 13:50)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발급번호	제 2020-0481-00699 호				
제품명	배전,조정장치및액세서리				
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	유효기간	직접생산 확인공장	용도	필수특이사항
3912110101	분전반	2020/06/30~ 2022/06/29	공장3.		
3912110301	폐쇄형배전반	2020/06/30~ 2022/06/29	공장3.		
3912110401	전동기제어반	2020/06/30~ 2022/06/29	공장3.		
3912118901	계장제어장치	2020/06/30~ 2022/06/29	공장3.		
3912110101	분전반	2020/06/02~ 2022/06/01	공장4.		
3912110301	폐쇄형배전반	2020/06/02~ 2022/06/01	공장4.		
3912110401	전동기제어반	2020/06/02~ 2022/06/01	공장4.		
3912118901	계장제어장치	2020/06/02~ 2022/06/01	공장4.		

★ 유의사항(행정조치)

- ①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,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
(위반시, 모든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)
- ②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시 증명서 반납
(미 반납시,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)
- ③ 직접생산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반납

★이 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★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을 통해 출력(2020-07-27 13:50)한 증명서로서 동 정보망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